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공무직근로자(홍보전문위원) 채용 공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홍보전문위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7월 28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등

□ 채용 분야, 인원 및 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홍보 전문위원	1명	• 행사(국제콘퍼런스 등) 기획·운영 • 홈페이지, SNS 운영·관리 • 콘텐츠(홍보영상, 카드뉴스) 기획·제작 •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 동향 분석 • 온오프라인 기관 홍보물 기획·제작	

※ 담당 예정 업무는 부서 상황에 따라 연관된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5조(공무직근로자의 정년)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등급 및 우대조건

등급	채용분야 자격기준	우대조건
가급	가. 홍보 관련 박사 취득 후 2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홍보 관련 석사 취득 후 11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홍보 관련 학사 취득 후 14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 채용분야 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생성형 AI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자
나급	가. 홍보 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홍보 관련 석사 취득 후 8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홍보 관련 학사 취득 후 11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가. 홍보 관련 석사 취득 후 5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홍보 관련 학사 취득 후 8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가. 홍보 관련 석사 취득 후 2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홍보 관련 학사 취득 후 5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채용권자가 위에 각 호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학위 및 경력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자격기준 ()안의 근무연수는 해당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 **담당 예정업무 관련성**이 있는 근무경력을 말함.

※ “전공”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을 말한다.

□ 가점 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부가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근무조건

□ 보수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보수기준('26년도 적용)

구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전문연구원 (월 보수액, 원)	3,734,000원	3,334,000원	2,982,000원	2,624,000원

※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및 정액급식비 별도 지급

□ 근무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 ~ 정년시 까지

※ 채용후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가지며, 업무 능력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근무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로 206 소재 백천빌딩 5~6층

□ 근무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 근무조건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름

3.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

- 지원서 1부. (첨부1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첨부2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3 서식)
- 결격사유 파악 1부. (첨부4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첨부5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첨부6 서식)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첨부9 서식)
- 공정 채용 확인서 1부. (첨부10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첨부11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학위 소지여부 증명 및 시험위원 제척사유 확인용

☐ 해당자 제출(선택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1부.(첨부7 서식, 담당업무 기재 必)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 담당업무 미기재 및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채용분야 담당업무**와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채용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시 총괄표(첨부6 서식)와 함께 제출
- ※ 경력요건의 경우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함.

○ 학위논문 요약서 1부.(첨부8 서식 사용)

○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기과학 및 환경(공)학 분야 등 기술사, 기사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환경측정분석사 등

○ 가점사항 증빙서류 1부.

-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 자격증, 가산점 대상은 인정되지 않음.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3.(월) ~ 2026. 8. 10.(월)

☐ 접수방법 : 전자우편(sun5144@korea.kr)

- ※ 위 접수 마감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접수 시 접수 여부 회신 예정
- ※ 응시서류는 관련 자격사항 등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 자필 서명 후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 전문연구원-본인 이름)**
- ※ 이력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5. 시험방법

□ 1차 : 서류전형

- 공고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 심사를 통해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직무적합도(자기소개서, 전공, 경력, 자격사항 등)를 평가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차 : 면접전형

- 업무적격성(3항목) 및 공직관(2항목) 등을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 평가항목 과락 : 심사위원 과반수가 평가항목 2개 이상을 "하"로 평가하였거나, 심사위원 모두가 하나의 동일한 평가항목을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결정
-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 경우 면접심사 당일 특정 주제에 대한 **논술 시험**을 실시한 후 평정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
-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
 - ※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등 추가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3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로 선정 가능

6. 시험일정(예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026.07.28.(화) ~08.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26.08.03.(월) ~ 08.10.(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담당자(전자우편 접수) ※ '4. 응시원서 접수' 참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08.19.(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
면접전형	2026.09.10.(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세부일정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6.09.14.(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 ※ 근로계약체결 예정 : 2026.9.21.(월)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 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매뉴얼(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기타 유의사항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회에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043-279-45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지원서(서식) 1부.
2. 자기소개서(서식) 1부.
3. 직무수행 계획서(서식) 1부.

4. 결격사유 파악(서식)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1부.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총괄표(서식) 1부.
8. 학위논문 요약서(서식) 1부.
9.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서식) 1부.
10. 공정채용 확인서 1부.
11.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끝.

[참고자료]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 리스트

성명	응시분야
	홍보전문위원

목 록	작성 여부
1. 지원서(필수)	
2. 자기소개서(필수)	
3. 직무수행계획서(필수)	
4. 결격사유 파악(필수)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필수)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필수)	
8. 공정 채용 확인서(필수)	
9.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필수)	
10.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필수)	
1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필수)	
12.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란에 “O” 표시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첨부 1)

지 원 서

채용분야	전문연구원			응시번호	빈칸 제출
성 명					
생년월일	월 일 (년은 기재 생략)				
연락처	(휴대폰)		(E-mail)		
전공사항	전공	재학기간	졸업여부	학위(취득일)	석사 학위논문명
	○○○○	00.0.0~00.0.0	졸업/수료	학사(00.00.00)	
업무관련 경력사항	근무기관	소속부서	직위	근무기관	담당업무
				년 월 일 ~ 년 월 일	
업무관련 자격사항	자격증	등록번호	발행처		취득일
					년 월 일
병역	병역 현황			복무기간	미필사유
	☐ 병역 필 / ☐ 미필 / ☐ 비대상				
가점 사항 여부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5% ☐ 10%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업무관련 특기분야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17.7월)에 따라 이력서에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은 기재 금지, 자격증 사진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첨부 2)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공무직 (전문연구원)	성명	
<작성요령>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출생지,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색 <작성내용> 1. 자기소개서 2. 응시취지 및 응시분야에 대한 소견 3. 학업 및 경험(경력) 4. 특기사항					
2026. . . 작성자 (서명)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출생지,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색

시험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관련 직무분야)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업무수행 의지,
직무수행방향 및 전략 등을 작성

2026. . .

작성자 (서명)

(첨부 4)

결격사유 파악

※ 아래 항목별로 해당 여부를 성실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해당여부	
	해당	해당없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공무직근로자(전문연구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첨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공무원근로자 (전문연구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실시하는 학력,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채용담당업무 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첨부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총괄)

※ 해당 증빙서류 앞부분에 함께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직 근무처명 (부서)	근무 월일수			현재 재직 여부	조회대상기관 인사담당자 연락처	
	경력기간	근무일수 (개월일)	주근무 시간		전화번호	이메일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필요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에 대해 현재 조회할 수 있는 **인사담당자 직통 연락처**를 기재할 것

②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일 경우 일수로
예시) 2021.2.1.~2022.3.9. : 1년 1개월 9일

③ 부서명을 기재하고 상근, 비상근 확인을 위한 주근무시간도 표시

④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별첨**(근무처명, 근무부서, 경력기간, **담당업무, 상근, 비상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8)

[석사/박사]학위논문 요약서

I. 논문 제목 : (한글명)

(영문명) * 필요시 기재

II. 논문심사 년월일 :

III. 논문 내용

☐ 목적

☐ 연구내용

☐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작성)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지원자 작성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해당 ☐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해당 ☐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공정채용 확인서

본인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전문연구원 지원(채용)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전문연구원 지원(채용)에 있어, 지원(채용)과 관련하여 환경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친·인척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입수하거나 입수를 위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2. 본인은 전문연구원 지원(채용)에 있어, 향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채용방법 :	채용직위(직급) :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